

인공지능과 첨단 복지 시스템 결합 '미래형 메가시티' 지향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분석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인공지능(AI)과 첨단 복지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됐다.

국회 밤의 예정인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이하 통합법안)에는 AI 기반 행정 혁신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바다연금 도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실험적인 조항들을 대거 담고 있다.

28일 광주일보가 분석한 통합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양 시·도는 통합 특별시를 '기본사회 선도지역' (제337조)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기 위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보장'·시행정 도입, 특별법에 명시=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촘촘하게 설계된 '소득 보장' 시스

AI 행정부터 바다연금까지 ... '미래도시 테스트베드' 자처

주민의 삶 국가·지자체가 책임... '기본사회 선도지역' 실현

템이다.

법안 제338조는 특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350조를 통해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농촌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복안을 담았다.

특히 전남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바다연금' (제261조) 제도는 눈길을 끈다.

갯벌의 탄소 흡수원 기능이나 해상풍력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 모델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자원이 창출한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민에게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행정 시스템의 대내적인 혁신도 예고됐다. 제135조는 '에이전틱(Agentic) AI 행정' 도입을 명시했다.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단순 반복 업무를 100% 자동화하고, 시민들에게 24시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 가상 공간에서 모의실험을 거치는 '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제136조) 의무화 조항도 포함돼,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 역사 정신 계승·재정지원 규모도 포함=교육과 역사 정신 계승 분야에서도 통합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제1조 목적 조항에는 기존의 '광주정신' 외에 학교와 상생을 의미하는 '대동정신'을 추가해 통합의 정신적 토대를 넓혔다.

제76조는 여순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민주시민교육 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해, 통합 특별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했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농어업과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담겼다. 제352조와 제387조를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퀘터를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재정 지원 규모도 구체화됐다. 수정안은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2(12%)를 20년간 매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수준이었으나,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지원 기간과 비율을 못 밟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보장받겠다는 전략이다.

재정적으로는 자치구와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교부금의 재원 세목을 명확히 구분(제9조)하고, 소속 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에 얹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제 조항(제28조)을 추가해 자치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 밖에도 한국기술원 지원 확대(제139조),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제118조),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국가 지원(제121조)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들이 보강됐으며, 국토부 장관이 가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특례(제242조)도 포함돼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명칭도 뒤집혔다. 수정안은 애초 설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규정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뒀다.

지위 규정도 문구가 바뀌었다. 초안은 특별시를 '정부의 직할로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적었다. 수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청사를 전남 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도록 명시해 통합 이후 행정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를 넣었다. 이는 27일 4차 간담회 합의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전남·광주 합의, 민주주의 본산다워"...강 시장 "대통령 조언 큰 힘"

광주와 전남이 오랜 산고 끝에 행정통합의 물꼬를 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간 대타협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치켜세우며 전폭적인 지원을 보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의 세심한 조언이 갈등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가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로 합의된 소식을 언급하며 "대화와 타협, 공존의 가치를 몸소 보여준 이번 결정은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다운 모습"이라고 극찬했다.

그간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얹혀 난항을 겪던 명칭과 청사 문제가 대화로 해결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합의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도 화답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의 글을 공유하며 "지난 오찬에서 대통령께서 '1청사나 2청사라는 수직적 명칭 대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신 덕분에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간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잠시 열렸던 '판도라의 상자'는 대통령의 응원 속에 바로 닫혔다"며 "앞으로 남은 고비들도 흔들림 없이 넘어서겠다"고 다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수정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특별시와 배분' 문구 삭제

주민 수익 축소 우려 반영

수정 보완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이하 통합특별법)에는 애초 특별법 초안에 포함됐던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특별시와 배분한다는 내용<2026년 1월22일 2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초안이 공개된 후 불거진 주민 수익 축소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통합특별법 수정안에는 초안에 담겼던 '제108조(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특례)'와 '제125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2개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인 125조는 설비용량 1000KW(킬로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발생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수익금(이하 주민참여 수익금)은 해당 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특별시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특히 주민참여 수익금도 발전소 소재 시군구의 경우 100분의 70, 발전소 소재지 특별시는 100분의 30으로 배분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신안군 등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자산이 송두리째 통합 시로 수용되게 돼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정된 법안은 수익 배분이 아닌 특별회계의 설치 가능성을 담아냈다. 수정 법안 124조에는 "특별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수익배분을 강제하지 않고 발전사업이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강제성을 없앤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특별회계를 통해 '공공형·주민참여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주진'과 이익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담았다. 주민참여수익금이라는 명칭은 이익공유 기금으로 변경됐다.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한 역시 변경됐다. 법안 초안 108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시 관련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 것으로 돼있었다. 특히 이법 1, 2호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과, 풍력계측시 설치와 지반조사 권한 등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하고 있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업 현장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가 허가권을 잃게 될 경우 책임주체의 불명확성과 행정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날 수정된 법안 110조에는 '특별시 관할 구역 시·군·구의 도서와 인접한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4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